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087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김동완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2. 24.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다른 법인을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당시 D는 원고에게 E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였는데, 2021. 9. 1. 기준 남아있는 원리금 액수는 79,287,887원(= 미회수원금 60,700,000원 + 연체이자 18,587,887원)이다.

나. D와 피고 B 사이의 확정채권양도계약

1) D는 2016. 3. 31. F 소유의 문경시 G 잡종지 5,102㎡ 및 H 잡종지 1,397㎡(이하 위 각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9. 12. 24. D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의 공탁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C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0. 5.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0. 5.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20. 6. 25.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2)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C의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단21408호), 위 법원은 2020. 6. 5.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가처분결정 정본이 2020. 6. 1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 C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중 1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2020. 6. 25.자 배당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피고 C 앞으로 배당한 배당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D와 피고 B 사이에 2019. 12. 24.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D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59,074,602원 및 그 공탁이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한 다음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072호). 위 법원은 2021. 5. 18.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5354호) 및 상고(대법원 2022다244683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22. 8. 29. 확정되었다.

2) 신용보증기금이 2022. 9. 8. 위 확정판결을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제시함으로써 피고 C의 D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탁금 중 40,926,216원 및 그 공탁이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20년 8월경 E과 D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2020. 9. 23.경 D 명의의 물권을 추적·조회한 뒤 2020. 10. 28.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D의 사해행위 일체를 추적하고 기록상 관리하여 왔으므로, 늦어도 2020. 10. 28.경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2. 3.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금융기관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과 D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2020. 10. 27.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5100호), D는 2018. 2. 20. J에게 의정부시 K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L는 2020. 9. 23.경 J에게 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20. 10. 28. J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J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8517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J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20. 10. 28. 무렵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채무자인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9. 12. 24.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J에게 증여한 위 의정부시 소재 토지 및 주택이 D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9년 12월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D의 F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피고 B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D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② 원고가 J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D가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D로부터 피고들에게 전전 양도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에게 1억 원이 배당되었는데, F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F는 2015. 6. 15.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문경시 H 잡종지 1,397㎡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③ F는 2016. 3. 14.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④ F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D에게 회사 소유 재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또는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2016. 3. 31. 당시 F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D가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J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851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2. 3. 23. 의정부시 K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D와 J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J는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D의 자력이 회복된 결과 더 이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가)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9.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5. 26. 다시 피고 C 앞으로 2020. 5.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법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에서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2. 24.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C의 원상회복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C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결정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07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021. 5. 18.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D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59,074,602원 및 그 공탁이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한 다음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8. 29. 확정된 사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이 위 확정판결을 대한민국에 제시함에 따라 2022. 9. 8. 피고 C의 D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탁금 중 40,926,216원 및 그 공탁이자에 관하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으로서, 2021. 9. 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액수는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 가액을 초과하는 79,287,88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목 록

1. 경상북도 문경시 [] 잡종지 5,102㎡, [] 잡종지 1,39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6. 3. 31. 접수 제467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 근저당권자 []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
2. 경상북도 문경시 [] 잡종지 5,102㎡, []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20. 6. 25.자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에게 배당된 100,000,000원 중 40,926,216원 및 그 공탁이자에 관한 피고 []의 대한 민국에 대한 배당금지청구채권, 같.

